

2023년도 제2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0.(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4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30건(안건번호 제2023-186098호~1889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86098호는 ★★★ 포스트에서 해외 언론사의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099호는 ○○○○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앨범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100호~186101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3-186102호~186105호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106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107호~186113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114호~186140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86141호~186156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26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4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26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609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포스트에서 게시자가 해외 신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원본 기사에서 배포 금지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가?
- 김준근 주임: 원본 게시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약관에는 개인적 그리고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을 한다고 밝히고 있음.
- A 위원: 복제한 것은 맞으나, 상업적인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굳이 가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검토의견을 부결로 주신 것 같음. 그리고 복제권 침해도 맞으니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면 경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까지 해온 것처럼 부결을 해도 될 것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번역한 원본 기사는 저작물성에 대해 논쟁이 될 수 있는 기사로 보임. 기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일종의 광고 형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원작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제작사 등 어떤 광고 내용을 인용했는지에 따라서 저작물 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움. 이 블로그는 헤비 블로그이지만 영리성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애매하거나 부족함.
- A 위원: 저는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복제권 침해는 가능하지만, 저작물성 여부는, 물론 개연성을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임.
- E 위원: 신고인은 어떤 사람인가?
- 김준근 주임: 신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신고를 해서 경쟁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음.
- C 위원: 그러면 번역기를 이용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로 해서 관련 자료에 인용 및 각주를 달아서 게시를 하면 불법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 A 위원: 공정이용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슈가 생길 것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면, 일반인도 번역기로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임. 게시자가 전문성을 내세우려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같지 않으며 심의대상 게시물로 누군가가 손해를 입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만약 기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부결 의견임.
- D 위원: 원본 게시물이 고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게시자의 의견,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있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 같지는 않음. 공정이용의 경우 출처표시가 필요한데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86098호에 대해 C, E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혼란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음. 부결 의견임.
-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의결 정족수 기준 가결 1, 부결 4로 안전번호 제2023-186098호는 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6 09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에서 게시자가 리뷰 글을 작성하면서 스트리밍 형태의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신고인은 누구 인가?

- 김준근 주임: 보호원에서 모니터링 한 사안임.

- B 위원: 게시자는 뮤직비디오를 올린다고 하면서 대신 음원을 올린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에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임.

- D 위원: 뮤직비디오를 올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유튜브에 있는 뮤직비디오를 링크 형태로 올리면 문제가 없음.

- E 위원: 너무 뻑뻑하게 조치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임. 예를 들자면 ◇◇◇◇◇이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팬들의 공유와 확산으로 덕분이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이용을 보여주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 이런 게시물은 공유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콘텐츠를 더 듣고 싶게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임.

- A 위원: 음원은 합법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이렇게 막 게시하는 것은 예전에만 본적이 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홍보 효과가 있는데, 시장 대체 효과와 비교했을 때 만일 음원을 유료로 듣거나 구입을 하려던 사람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듣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경우 홍보 효과 보다는 시장 잠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침해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어느 쪽일지는 애매함.
- E 위원: 수록곡들이 많이 올라 온 경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게시자는 아마 실수로 음원을 올린 것 같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86099호에 대해 원안대로 경고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성주, C, D, E 위원: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099호는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6100호~18610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

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원본에도 자막이 있는데, 게시자는 자기가 직접 자막을 제작했다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B 위원: 원본 영상은 어디서 확보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 김준근 주임: 주로 해외 토렌트 사이트로 추정됨.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86100호~18610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86100호~18610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6102호~18610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102호~1861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8610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8610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10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86107호~18611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86107호~18611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107호~18611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6114호~18615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뮤지컬은 공연 이외에 별도의 합법 시장이 있는가?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올라오는 뮤지컬은 합법 시장에서 판매가 안되는 것임.
- D 위원: 뮤지컬을 합법적으로 녹화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는가?
- E 위원: 라이선스가 많아서 어려운 면이 있음. 보통 뮤지컬을 중계하는 경우, 2만 5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공연만 중계를 하고 있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86114호~18615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114호~1861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86141호~18615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86141호~18615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6141호~1861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6157호~18892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만화/웹툰, 일반영상, 출판/어문, 영화,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슬픔의 삼각형’)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7002호(‘슬픔의 삼각형’)는 2023.05.17.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70인트에 판매중임.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타임: 트래블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7481호(‘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타임: 트래블러’)는 2023.09.06. 개봉한 한국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530포인트에 판매중임.
(‘데블스 플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88014호(‘데블스 플랜’)는 2023.09.26. 공개한 한국 예능으로 웹하드에서 72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186157호~1889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86157호~18892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3-186098호는 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186099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인건번호 제2023-186100호~186101호, 제2023-186102호~186105호, 제2023-186106호, 제2023-186114호~186156호, 제2023-186107호~186113호, 제2023-186141호~186156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186157호~18892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17.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